

[별지 제14호서식] <개정 2012.6.29>

위 생 관 리 등 급 표 (등급)

○ 업 종 :

○ 업 소 명 :

○ 대 표 자 :

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
생 관리등급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182mm×257mm
(인쇄용지(특급) 120g/m²)